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20-389호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 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가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상 호 :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
2.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56
3. 사업자등록번호 : 116-81-19031
4. 대표이사 : 권희백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 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 02-003-00035
6. 등록일 : 2020. 9. 17.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0-64호

「방사선작업종사자 등의 업무상 질병 인정범위에 관한 규정」을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6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방사선작업종사자 등의 업무상 질병 인정범위에 관한 규정」 폐지고시(안) 행정예고

1. 폐지이유
 - 가. 동 고시는 원안위 법령상 위임 규정이 부재
 - 나. 산업재해(업무상 사고·질병)의 인정과 보상에 관한 사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진행
 2. 주요내용
 - 「방사선작업종사자 등의 업무상 질병 인정범위에 관한 규정」 폐지
 - 이 폐지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1) 일반우편 : (03154)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

2) 전자우편 : jhahn0202@korea.kr

3) 팩스 : 02-397-734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전화 02-397-7273, 팩스 02-397-73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616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중정정

관보 제19858호(2020.10.20.)에 게재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597호(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0년 10월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관보 내용	정정사항	비고
4. 의견 제출 이 개정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30일까지	4. 의견 제출 이 개정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26일까지	관보 제19858호(2020.10.20.) 172쪽, 위에서 9번째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617호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6일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보보호 강화의 필요성이 크고 매출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정보보호 공시 의무화를 도입하고 불이행시 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 제도의 일부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보보호 공시 의무화 신설 (안 제13조제2항)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안전한 인터넷 이용을 위해 사업분야 및 규모 등이 일정규모 이상인 자는 정보보호 투자 및 인력현황 등 정보보호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근거를 마련함.

나. 정보보호 공시 의무 불이행에 따른 처벌 조항 신설(안 제41조제1항제1호)

정보보호 공시 의무대상인 자가 공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 조항(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근거를 마련하여 공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